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4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전진숙·박희승·권칠승

김정호 · 김남희 · 정을호

이정문 • 허종식 • 김윤덕

이인영 · 이연희 · 윤후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1990년 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 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.

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73%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,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여 정원충족률 감소,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하지만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하는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

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,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6조 후단 신설,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평가"를 "평가·해산"으로 한다.

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정한다) 및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추가로 보조한다.

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"어린이집 운영 법인"이라 한다) 은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해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 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 ·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등을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,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및 제5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43조의4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) ①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영유아 수 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 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 위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잔여재산 처분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---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 -----<u>평가·해산</u>----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 도 · 특별자치도(이하 "시 · 도" 라 한다) 및 시・군・구(자치구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 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 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 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 •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------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

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직 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 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 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 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・ 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 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 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<후단 신설>

<신 설>

(ه	경우	제10조제2호에	따른

이 경우 세10소세2호에 따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정한다) 및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한다.

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 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 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 분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 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"어린

이집 운영 법인"이라 한다)은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의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어린이집 운영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어린이 집 운영 법인이 원활하게 해산 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라 해산한 어린이집 운영 법인 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 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 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 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재산 중 목 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 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 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 야 한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 영 법인의 해산,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및 제5항에 따른 잔 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 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
- 영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

<u><신 설></u>

<u>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</u>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4(어린이집의 설치·운 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 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) ①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 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 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 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어린이집 운 영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

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 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.